

자율검사업무 처리지침

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부 이용권 부장

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공의 부실시공 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LPG충전시설, LPG저장시설, LPG판매시설, LPG특정사용시설, LPG기술검토처리지침 등 시공과 관련된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정하였다. 그 동안 가스시공업체의 시공에 도움이 되고자 연재했던 LPG시설 검사업무 지침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친다. [편집자 주]

제1조 [목적]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,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자율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 실시할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범위]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고압가스제조(신고대상시설을 포함한다)·충전·저장·판매시설의 자율검사
2. 냉동제조시설(신고대상시설을 포함한다)의 자율검사
3. 액화석유가스의 충전·저장·집단·판매시설의 자율검사

제3조 [자율검사 주기] 업소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시기에 자율검사를 실시하는 것

을 원칙으로 하며 자율검사 대상별 실시주기는 별표와 같다.

제4조 [검사기준] 자율검사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3호 정기검사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.

제5조 [자율검사결과 처리] ① 자율검사결과는 정기검사표를 이용, 작성하고 그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.

② 자율검사를 실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율검사필증을 발급한다. 다만,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“부적합사항 개선권고서”를 검사필증과 동시에 발급한다.

③ 자율검사이시 “부적합사항 개선권고서”를 발급

한 시설 중 그 부적합사항이 법적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결과 입력시 “부적합”으로 입력하고 부적합내용도 동시에 입력한다.

④ 부적합사항이 없거나, 법적 검사기준 외의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“적합”으로 입력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전산에 입력치 않는다.

제6조 [기타] ① 자율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수수료는 시설별 정기검사 수수료(고법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완성검사수수료)에 준하여 징수한다.

② 자율검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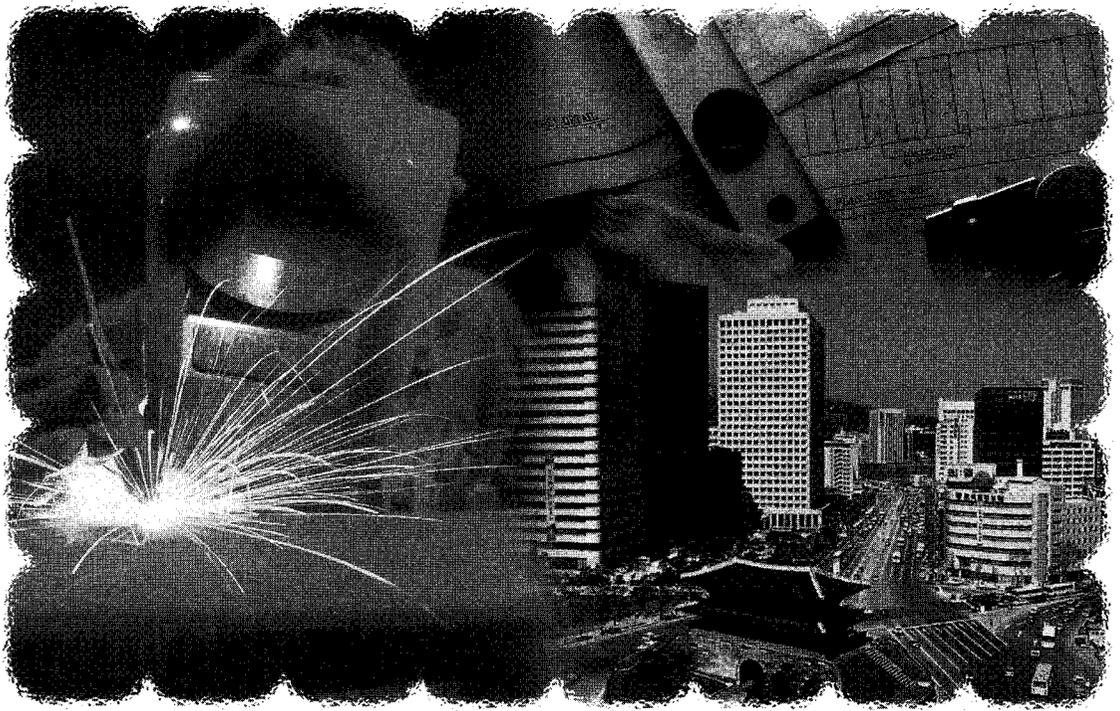
기 정기검사시 시정여부를 확인토록 한다.

③ 그밖의 자율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업무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00. 10. 23)

제1조 [시행일] 이 지침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[폐지]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[엘피620-1549호(2000. 4. 21) : 자율검사업무처리지침 운영방안 통보]는 폐지한다.



별 표

구 분		자율검사대상별주기						
고	고압가스 제조·충전·저장	그밖의 가스 (불연성)						
		가연성·독성						
	냉동제조 시설	불연성 (건축물 냉·난방 용 제외)						
		불연성 (건축물 냉·난방용)						
	고압가스판매시설							
액	액화석유가스 충전·저장·집단공급·판매							

별지 제1호 서식

자 율 검 사 필 증

사 업 의 종 류			
업 소 명		대 표 자 (성 명)	
사 업 소 소 재 지			
검 사 원 성 명		검 사 년 월 일	
차 기 검 사 일			

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0조,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제조 (충전, 저장소, 판매)시설, 액화석유가스 충전(집단공급, 저장소, 판매)시설의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(인)

별지 제2호 서식

직 인 생 략

자율검사 부적합사항 개선권고서

상 호		시설구분	
사업소 소재지			
검 사 일		검 사 원	
부 적 합 사 항			

귀 업소는 가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대행실시 결과 위와 같은 부적합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조속히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○○○ 지역본부장(○○○지사장)

별지 제3호 서식

처리기간

7일

자 율 검 사 신 청 서

신 청 인	업 소 명		대표자(성명)	
	사 무 소 소 재 지	(전화 :)		
사 업 의 종 류			허가년월일	
검사 희망 년월일				

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(충전, 저장소, 판매)시설, 액화석유가스 충전(집단공급, 저장소, 판매) 시설의 자율 검사를 귀 공사에서 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서명 또는 날인(인)

한국가스안전공사

(인)

※ 구비서류 : 없음

수 수 료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비
징수규정에 의한 수수료